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2. 27.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 및 발의자 : 2019. 2. 14.(목),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발의의원 17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2. 18.(월), (의안번호 제90호)
-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 2. 25.(월),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원안가결)

2. 제안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영민 의원

나. 제안이유

정례회의 회차별 처리안건을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의결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고, 2018. 12. 3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 명칭변경 등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정례회의 회차별 처리안건 재조정(안 제27조제1호 및 제2호)

- 제2차 정례회 처리안건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1차 정례회 처리안건으로 변경

2)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등 정비(안 제30조제1항)

- 복지교육국 ⇒ 복지가족국
- 지속가능국 ⇒ 문화생활국
- 신설부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

: 노동권익센터, 구정연구단 ⇒ 건설재정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생략

4. 검토의견

- 현재 제2차 정례회의 처리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1차 정례회 처리안건에 비하여 처리안건들이 성격상 방대한 분량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내실 있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미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도 기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안건을 제1차 정례회 처리안건으로 변경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의결을 기하려는 것임.

- 현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시·군·구의회는 9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중 조례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아울러 2018. 12. 3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국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노동권익센터 및 구정연구단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 소관사항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참조)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